

1. 개정이유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확대 시행(36개 시·군, 2020.7.3)으로, 동 지역의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던 기능사 자격의 검사원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에 한시적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0.7.22)하였으나, 2020년 7월 21일 이전에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기능사 자격 검사원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 검사원에 대하여도 2020년 7월 3일부터 동 규칙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적용일을 현행의 “시행일('20.7.22) 당시”에서 “20.7.3. 당시”로 변경(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환경부령 제 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2020년 7월 3일

당시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 2 조 (종 합 검 사 확 대 지 역 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u>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u> <u>당시</u>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 사 원 (「 자 동 차 관 리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 정 정 비 사 업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 2 조 (종 합 검 사 확 대 지 역 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u>2020년 7월 3일 당시</u>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